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

신고인

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

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

##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	<b>京</b>	처리기간 7 <sup>°</sup>	일			
	성명(	성명(대표자) 생년				Į.				
신청인	주소(	주소(체류지)								
	(전	(전화번호: 휴대전화: )								
개업공인중: 종별	개사 [ ]팀	법인 [ ]공연	민중개사 []법	d 제7638호 부칙 :	제6조제2형	항에 따른 개입	<b>넙</b> 공인중개사			
	명칭	명칭 등록번								
	변경	전 소재지								
중개사무:	소변경	후 명칭		(전화번호 전화번호		)				
	변경	후 소재지		(휴대전호	<del> </del>					
			(전화번호	:	)					
「공인중개사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
							서명 또는 인)			
시장·군수·구청장 기하 										
신청인 제출서류	포함합니다)에 중개사무소를 확보(소유·전세·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)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(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조례로						을 수수료 을 시•군•구		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건축물대장(「건축법」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)									
처리절차										
이전 신고	<b>→</b>	접수	제출서류 확인	→ 신고기준   검토 및 결제	→ [	중개업시무소	: 등록증 재교부			
	시	<b>・</b> 군 <b>・</b> 구	시・군・구	시・군・구			<b>-</b> -			

시・군・구

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